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LTC더블연금보험

2.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의 종류	연금개시나이 (Y)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납입 주기
1형 적립형	45세 ~ 80세	5년, 7년, 10년이상	15세 ~ min(Y-13,65)세	월납
2형 거치형	45세 ~ 80세	일시납	15세 ~ (Y-10)세	일시납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기간이 30년일 경우 연금개시나이(Y)는 45세~70세로 적용

3. 보험기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Y세(45세~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4. 연금지급형태

구 분	연금 지급형태
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보증 / 20년보증 / 30년보증 / 100세보증
장기요양연금	최고 10년 / 20년 한도

5. 보험가입금액에 관한사항

구 분	가입금액
1형 적립형	월납영업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
2형 거치형	일시납영업보험료의 100%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7.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또는 일시납보험료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보험종류	1형 적립형(월납보험료)	2형 거치형(일시납보험료)
최저보험료	2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매회 5만원 이상)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 ‘(나)’ 에서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

로 매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2) 거치형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 15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의 한도를 적용한다.

8.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9. 예정위험률의 적용, 변경 및 보험금의 변동

가. 장기요양자 관련 예정위험률은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정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장기요양자 관련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정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가’ 및 ‘나’ 에 따라 장기요양자 관련 예정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 및 장기요양연금도 변동된다.

라. ‘가’ 및 ‘나’ 에 따라 장기요양자 관련 예정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 이전까지 예정위험률의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예상 연금액의 변동 내역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공지한다.

10.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등이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칠 경우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의 내용 및 예정위험률의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가’ 항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및 예정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 이전까지 변경으로 인한 연금액의 변동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공지한다.

다. ‘가’ 항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 및 예정위험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

부터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위험률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한다.

11. 공시이율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기타사항

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용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 해당일에 대체한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바.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 1)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 2) '1)' 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3)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2)'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사.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형 적립형에 한함)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10,000원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3.0% + 35,000원

아.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1) 1형 적립형의 장기납입보험료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한다.

납입회차	할인율
61회차 이상 120회차 이내	기본보험료의 0.5%
121회차 이상	기본보험료의 0.7%

2) ‘사’에 의하여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